

입 소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은노인복지타운(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의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시설의 입소대상, 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에 필요한 제반의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제 2 장 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효은노인복지타운의 입소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1·2 등급 및 3·4·5등급 판정(시설급여)을 받은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비용을 내고 입소가 가능하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관할 시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은 무료로 입소가 가능하다.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효은노인복지타운의 정원은 70명으로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2. 효은노인복지타운은 입소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 나.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 다.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등

제 3 장 입소계약

제5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와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2. 단, 계약기간 중 급여비용 변경 발생 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
3. 시설과 입소자는 입소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갑”)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간(“을”)에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을 체결 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준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임무

마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나 종교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라 입소자의 간호화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사 입소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자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화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마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7조(계약서 작성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본 시설이 입소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승인하여,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임을 약정함에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14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14일의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가. 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법정 전염병, 심한 골다공증의 누락 등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경우)

나. 이용료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폭력, 폭언, 심한 질병, 다른 입소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가 있을 때

라.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타 입소자에게 전염우려가 심할 경우

마. 지병의 악화 및 중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중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경우

바.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입소자와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병환이 악화되어 매일매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입소자의 신변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 될 경우

3. 입소자가 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원을 요청할 시에는 14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은 이를 접수했을 경우 전원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처리)

1.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전조 각항에 해당하였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사항을 가지고 보관하여야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전 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14일이 지나도 잔치된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관리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10조(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이용료는 별지 제1호와 같다.

2.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식사재료비

나.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다. 이·미용비

라.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마. 본 시설에서 적용하는 비급여 해당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비급여종류	내 용	산출근거	금액	단위(일)	비고
식재료비	식사재료비, 간식비	2,000원 × 3식 = 6,000원	6,000원	1	
상급침실 사용료	2인실	5,000원 × 1인× 1일= 5,000원	5,000원	1	

바.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시설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입소이용료의 금액을 즉시 적용한다.(별지 제1호)
5. 이용료 및 기타 부담금의 체납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적조치에는 체납 이용료에 대한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한다.
6. 계약이 종료했을 때 반환금은 퇴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자의 반환금 수취인에게 반환한다.

제11조(입소보증금) 본 시설은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협약병원) 시설은 지역내 의료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들에게 의 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14조(의료서비스의 절차)

1.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병이나 부상의 경우, 약물치료 외에 물리치료나 간 호, 요양 등 기관에서 가능한 치료는 기관의 책임 하에 치료한다.
2. 중환 또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사전 연락을 통하여 합의 또는

동의한 지정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한다.

3. 응급상황의 경우, 기관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정병원으로 이송 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4. 사망하였을 경우, 사전에 보호자와 약속 된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5조(위급시 대처) 별도의 위기상황대응지침을 두고, 위기상황이 발생시 이에 준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와 의무)

1. 직원은 성심성의를 다해 어르신을 수발하고, 입소자의 생활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2. 기관은 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서비스와 함께 청결한 생활환경 및 위생상태를 유지 관리한다.
3.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 건강상태의 안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요양실의 배치 및 변경은 건강상태, 수발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5. 보호자는 이용료 및 제반비용을 납부한다.
6. 입소자가 고의 혹은 타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비품을 훼손, 멸실했을 경우 비용부담 및 법적인 책임은 가족과 보호자가 부담한다.
7. 음식물 및 개인물품을 반입 할 때에는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보호자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이를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9. 보호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가 받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1. 입소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1.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여, 서비스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숙박 및 24시간 보호서비스와 함께 주, 부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
5. 신변처리 및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회적 기능회복과 신체적 기능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보호자가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선 조치 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면회 및 외박, 외출)

1. 면회 및 외박, 외출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 면회 : 09:00 부터 18:00
 - 나. 외출 : 외출 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승인 후 외출 가능
 - 다. 외박 : 외박 시에는 미리 통보를 하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승인 후 외박 가능
2. 면회 및 외출, 외박은 시설이 판단하기에 입소자의 정서와 건강상태에 따라 불허할 수 있다.

제1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입소자와 보호자는 기왕증, 합병증, 특이체질 등으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외출이나 외박 중 생긴 사고에 의해서는 시설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서비스제공자의 명백한 실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그 범위는 해당보험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분쟁의 조정) 입소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보호자는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고 필요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를 만들 수 있으며, 만

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인권의 존중과 사생활보호)

1. 시설은 입소어르신인 인권을 옹호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2. 종사자는 동료종사자나 입소자 간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시설은 이에 따른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설은 입소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통하여 제공한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기록지를 작성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제2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입소자는 본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효은노인복지타운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